# 06. 인적·학적사함



# 훈 령

# ■ 훈령 제477호 (1학년)

# 제7조(인적·학적사항)

- ① '학생정보'란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한다.
- ② 중·고등학교에서는 입학 전 전적학교의 졸업연월일과 학교명을 입력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연월일과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이라고 입력한다.
- ③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교와 학년, 학적변동 내용을 입력한다.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표 7과 같다.
- ④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 ■ 훈령 제433호 이전 (2~6학년)

## 제7조(인적·학적사항)

- ①~③ 〈 '훈령 제477호'와 동일 〉
- ④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 별표 7(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 1. **입학**: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 2. 취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 3. 재학: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 4. 재입학: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 5.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법적근거

기재요령 아내

목적 등

인적·학적 사항

출결상황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6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사항 등

- 6.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 7. 전입학: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 8. 복학: 휴학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학교에 들어옴.
- 9. 진급: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 10. 조기진급: 학칙에 따라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 11. 전출: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 학교로 학적을 옮김.
- 12. 유급: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따라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 13. 휴학: 질병 등의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의무 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 14. 면제: 「초·중등교육법」제14조에 따라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 15. 취학유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 16.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외학적관리'할 수 있음).
- 17. 제적: 고등학교에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되어 학적에서 제외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 18. **자퇴**: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인해 학생의 바람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 19. 퇴학: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따라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 20. 수료: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 21. 졸업: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 22. 조기졸업: 학칙에 따른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 23. 명예졸업: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 명예졸업은 수료 및 졸업(「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8조)이나 자격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과 무관함.



# 해 설

# 1. 제7조(인적·학적사항)

- 가. 학생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일치하여야 한다.
- 나. 주소를 누가 기록하여 학생의 거주 관계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다.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취학, 유예, 면제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 라.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 연월일과 검정고시 합격 내용을 입력하되, 중학교 입학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으로 입력한다.

## [2~6학년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입력]

- 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제8호(전학)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결정 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 ※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신청에 의한 학적 변동은 제한함. 다만, 가해학생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8호(전학)에 따른 조치와 함께 수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 교육장은 위 제8호(전학)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2. 별표 7(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 가. 입학

- 1)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학교에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
- 2) 외국인 학생이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경우 국내 학생과 동일하게 입학으로 처리한다.

#### 나. 취학

1)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처음으로 의무교육기관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취학으로 처리한다.

〈예시〉 외국인 학생이 처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에 들어오는 경우 '취학'으로 처리함.

#### 다. 재취학

- 1) 의무교육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중단하였다가 의무교육연령 내에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하는 경우 학년, 학교 및 학교급을 달리하여도 재취학으로 처리한다.
- 2) 유예·면제된 자가 재취학할 때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학구가 변동된 경우에는 타교에 재취학할 수 있다.
  - ※ 동일 학교급에 한해 원적교에서 재취학 학교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자료가 전송됨(재취학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신규 생성하지 않도록 유의함).

법적근거

기재요령 아내

목적 등

인적·학적 사항

출결상황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6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사항 등

# 라. 편입학

1)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이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4조).

## 마. 유급

- 1)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
  - 가) 출석일수 부족은 당해 학교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한 것을 말함.
    - 〈예시〉수업일수가 191일인 경우 191의 3분의 2는 127.33… 으로 계산되나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128일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년도말에 유급대상자로 선정함.
  - 나) 유급대상자는 학년도말에 [학적-진급대상자 반편성관리-진급대상자 반편성관리-대상자 생성]의 {유급자관리} 탭에서 등록하여 진급처리에서 제외함.
  - 다) 유급으로 인하여 중복된 기간 동안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으로 삭제함(학년 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은 제외함).

## 바. 면제

- 1)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 (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한다(의무교육기관에만 해당).
  - 가) 정당한 해외 출국이란 이민, 가족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 나)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제 체류 기간(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
  - 다)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 불안, 면제 사유와 직결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한 해외출국을 지속할 수 없어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 하여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음(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관함).
  - 라)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면제'로 처리함.

## 사. 취학유예

- 1) 입학 전 유예자(면제자)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5항).
  - ※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경우는 읍·면·동의 장과 교육장에게만 통보함.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취학유예 처리함.

## 아. 유예

- 1)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시·도교육감(타 시·도 포함) 등록 여부 확인 필수(상세 내용은 소관 부서(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의 공문 및 안내사항 참조)
  - ※ 학력인정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은 모두 다른 기관임에 유의([참고자료 3] 참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

- ① 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 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2) 유예 또는 정원 외 학적관리된 학생이 외국에서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치거나 국내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면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자. 명예졸업

- 1) 명예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 ※ 명예졸업 업무 처리 절차
    - ① 심의 주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② 심의 절차: 심의 신청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 →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

법적근거

기재요령 아내

목적 등

인적·학적 사항

출결상황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6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del>동특</del>성 및 종합의견

기타 사항 등



# ■ 인적·학적사항

<b>♠</b> 하세저버	성명 :			성별 :	주민등록	번호 :				
학생정보	주소 :									
<b>6</b> -1711-1	년	월	일	□□초등학교	2 제1학년 입학 (	년	월	일	전출)	
② 학적사항	년	월	일	○○초등학교	제2학년 전입학					
<b>③</b> 특기사항										

# 학생정보

- 가. 학생의 성명은 성과 이름 사이에 공백을 두지 않는다.
- 나.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을 그대로 입력한다.
  - ※ 증빙 서류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성명 표기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 성별은 '남' 또는 '여'로 구분하여 입력함.
  - ※ 복수국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적용하여 입력함.
- 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국적자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함. 다만,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 방식에 따라 앞 6자리는 생년월일, 뒤 7자리는 남자는 '3000000', 여자는 '4000000'으로 하고, 2000년 이전 출생자는 남자는 '1000000', 여자는 '2000000'으로 입력하며 동성 쌍둥이일 경우 끝자리에 1·2를 부여함.

# 【기재 방법】

- 남학생의 경우: 160521-3000000 ○ 여학생의 경우: 161103-4000000
- 동성 쌍둥이인 경우: 160315-3000001, 160315-3000002
- 라. 교육정보시스템 [학적-기본학적관리-학생주소연계]를 통하여 학생의 주소를 입력할 수 있다.

## [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 방법]

가. 신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수정'처리하며,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정정' 처리한다. 다만, 신입생의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 처리하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주소는 별도 정정절차 없이 교육정보시스템의 {누가주소등록} 탭에서 처리한다.

- ※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으로 인한 정정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 등)를 근거로 함.
- ※ 학생정보 정정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 〈기재 경로〉······

- ▶ 신입생의 학생정보(성명 제외) 수정: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
- ▶ 재학생: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
- ▶ 학업 중단 학생: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재학아닌학생}
  - ※ 신입생이 입학 학년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개명을 제외한 학생정보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학적 반영 취소 후 수정
- ▶ 졸업생: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졸업생자료관리-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
- ▶ 보존시스템으로 자료가 이관된 졸업생: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보존-학생부정정관리-졸업생학생부 정정대장작성]
- ※ 비밀전학의 경우 학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입교에서는 변경된 주소를 누가기록하지 않음(「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 엄수 등의 의무) 및「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②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해설] 내용 참조

#### ⑤ 특기사항

가. 학교의 통폐합 등으로 교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기사항에 교명 변경 내용을 입력한다.

#### ·····〈기재 경로〉······

- ▶ 교육정보시스템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의 {학적사항} 탭에서 '학적특기사항'의 '일괄입력'을 선택하고 관련 내용을 등록함.
  - 〈예시〉 2024.03.01. △△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2024.09.01. ○○초등학교와 통합
- 나. 유예·면제·재취학·편입학·유급·조기진급 등 중요한 학적변동인 경우 학적사항의 '특기사항'에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 ※ 중요한 학적변동은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국학생 등'의 재취학, 편입학 시 해외 수학 기간 및 외국학교명은 '특기사항'에 기재하지 않음.

#### 〈예시〉 출석일수 미달로 유급된 경우

학적사항	2024년 03월 01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
특기사항	2025.02.28. 출석일수 미달로 초등학교 1학년 유급

법적근거

기재요령 아내

목적 등

인적·학적 사항

춬결상황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6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사항 등

# 〈예시〉 학칙에 따라 명예졸업으로 인정된 경우

학적사항	2023년 03월 02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 2025년 02월 07일 □□초등학교 명예졸업
특기사항	2024.07.05. 학교교육활동 중 사망

## 〈예시〉 사망으로 인해 면제 처리된 경우

학적사항	2024년 03월 01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6월 15일 면제)
특기사항	2024.06.15. 질병으로 사망

# 〈예시〉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으로 유예한 경우

학적사항	2024년 03월 01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4월 15일 유예)
특기사항	2024.04.15. 질병치료로 인한 유예 2024.04.16. 정원 외 학적관리

# 〈예시〉 대안교육기관 재학으로 유예한 경우

학적사항	2024년 03월 01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3월 28일 유예)
특기사항	2024.03.28. 대안교육기관 재학으로 인한 유예 2024.03.29. 정원 외 학적관리

# [2~6학년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입력]

- 다. '특기사항'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제1항제8호(전학)에 따른 조치사항은 조치결정 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에서 {학적사항} 탭의 '학적특기사항'에 입력함.

# 〈예시〉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받은 경우

학적사항	2019년 03월 04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6월 12일 전출) 2024년 06월 13일 △△초등학교 제6학년 전입학
특기사항	2024.06.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 조치

## 4 기타

- 가. 입학·재취학·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 ※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입학·재취학·편입학 등은 불가능함.
  - ※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음(당해 학년도 유예 후 재취학 포함).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 시켜 주어야 함.
- 나. 전출일과 전입일은 연중 공백 기간이 없도록 처리한다.

# 【기재 방법】

- 금요일까지 전출교에 등교하고 월요일에 전입교에 등교한 경우 전출일은 일요일로, 전입일은 월요일로 함.
- 단, 도서벽지 등 국내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1일의 공백을 인정하고, 국외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최대 3일의 공백을 인정하며, 이 기간은 수업일수에서 제외함.
- 다.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당일은 전입일로 하고 전출일은 전입일 하루 전으로 처리 한다.

# 【기재 방법】

-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하여 화요일에 전출하고 화요일에 전입한 경우, 전출교에서는 월요일까지를 수업일수로, 전입교에서는 화요일부터 수업일수로 처리함.
- 라. 유급·재취학·편입학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 1) 유급·재취학·편입학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할 때는 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제외한 항목(수업일수, 출결상황, 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에 대하여 재취학·편입학일 이전의 내용은 학업 중단 시의 내용으로 입력하고, 유급·재취학·편입학일 이후의 내용은 유급·재취학·편입학 후 새로 수행하는 사항을 입력 한다.

법적근거

기재요령 아내

목적 등

인적·학적 사항

출결상황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6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사항 등

# 【기재 방법】

○ 2022.07.12.자로 ○○초등학교 6학년에서 학업 중단하고, 2024.05.10.자로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재취학하는 경우에는 2022.05.10.-2022.07.12.까지의 내용은 삭제함.

2022.05.10.	2022.07.12. 6학년 유예
이전내용 인정	중복기간 삭제
	새로 수행하는 사항 입력
2024.05.10. 6학년 재취학	2024.07.12.

○ 2023.11.07.자로 ○○초등학교 5학년에서 학업 중단하고, 2024.08.23.자로 ○○초등학교 5학년으로 재취학 후 다시 2024.10.16.자로 학업 중단을 한 경우에는 2023.08.23.자 이후의 내용은 삭제하되, 재취학 이후의 기간 (2024.08.23.-2024.10.16.) 동안 수행한 내용을 입력함.

2023.08.23.			2023.11.07.	5학년 유예
이전내용 인정	중복기간 4	삭제	이후내용 삭제	
	새로 수행하는 /	사항 입력		
2024.08.23	. 5학년 재취학	2024.10.16	6. 5학년 유예	

※ 유급·재취학·편입학 등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함.

# 마. 정원 외 학적관리 방법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예시〉 유예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학적사항	2024년 03월 01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7월 09일 유예)
특기사항	2024.07.09. 질병치료로 인한 유예 2024.07.10. 정원 외 학적 관리

- 2) 입학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 학년도 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진급처리가 된 경우 정원 외 학적 처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 학년도 3월 1일임.

#### 〈예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학적사항	2024년 03월 01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6월 14일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특기사항	2024.06.1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 바. 귀국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

- 1) 귀국학생 등의 학년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가) 학년 배정을 받아 재취학·편입학하는 경우
  - 나)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재취학·편입학하는 경우
- 2) '귀국학생 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 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이하 생략)···
- 3) 귀국학생 등의 해당 학년 수료기준 출석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다.
- 4)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는다.
- 5) 외국인인 학생과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면제된 학생이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하고자 할 때,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예시〉학업을 중단(면제)하였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

학적사항	2023년 03월 02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3년 07월 14일 면제) 2024년 09월 04일 □□초등학교 제2학년 재취학
특기사항	2023.07.14.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면제

※ 의무교육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중단하였다가 의무교육연령 내에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년, 학교 및 학교급을 달리하여도 재취학으로 처리함(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 으로 처음 들어오는 경우는 입학으로 처리함). 법적근거

기재요령 아내

목적 등

인적·학적 사하

춬결상황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6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사항 등

## 〈예시〉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생이 다시 들어온 경우

학적사항	2022년 03월 02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3년 07월 20일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2024년 04월 01일 ○○초등학교 제3학년 재취학
특기사항	2023.07.2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6) 귀국학생 등이 취학·재취학·편입학 시, 해당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와 학년 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제출 서류

- (1)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 ※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8.22.)에 따라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교육부(www.moe.go.kr)의 [정책]-[초·중·고 교육]에 학력인정학교 목록 안내)에서 유학을 한 경우, 취학·재취학·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함(관련 문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 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 (2) 성적증명서
- (3)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5)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del>종증</del>명서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관리'참고
- (7) 기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서류(반드시 관할교육청의 서류 확인 필요)

# 나) 학년 배정 방법

- (1)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 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하다.
  - (가)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 (나) 국내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기가 부족한 경우 아래 학년(학기)으로 입급함.
- (다) 국내학교의 재학 학기보다 하위 학년(학기)을 이수한 경우 정상적인 학기 이수로 볼 수 없음.
  - 다만,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음.
- (라)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인 경우 인정됨(「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
-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 〈예시〉 외국인 학생이 처음으로 1학년이 아닌 학년에 들어온 경우

학적사항	2024년 09월 02일 □□초등학교 제2학년 취학
특기사항	

※ 의무교육대상자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오는 경우 취학으로 처리함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들어오는 경우는 입학으로 처리함).

〈예시〉외국인 학생이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에 1학년으로 처음 들어온 경우

학적사항	2024년 05월 09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
특기사항	

## 〈예시〉 외국인 학생이 편입학한 경우

학적사항	2021년 03월 02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1년 09월 16일 면제) 2024년 09월 20일 □□초등학교 제4학년 편입학
특기사항	2021.09.16. 가정사정으로 인한 면제

※ 외국인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면제로 처리함.

〈예시〉 외국인 학생이 시·도교육청에서 학력심의를 통해 들어온 경우

학적사항	2024년 09월 02일 □□초등학교 제5학년 취학
특기사항	○○교육청의 학력심의를 통해 취학 이전 학력 인정

법적근거

기재요령 안내

목적 등

인적·학적 사항

출결상황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6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사항 등

# 사. 한국학교 전출·입 처리 방법

- 1)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한국학교와의 전출·입의 경우 국내학교 전출·입 방법과 동일하다.
- 2)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학교와의 전출·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국내학교에서 한국학교로 전출 시〉

- ① 한국학교에서 전출 동의 요청 공문을 확인함.
- ②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전출관리-전출관리-종합자료검색]의 {전출생추가등록}에서 한국학교로 전출처리를 함.
- ③ 국내학교에서 한국학교장에게 전출 승인 공문을 팩스로 전송하고, 공문 원본과 전학서류 일체를 밀봉하여 학부모에게 전달, 학부모는 한국학교장에게 제출함.

##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 ① 국내학교에서 한국학교로 전입 동의 요청 공문을 발송함.
- ②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전입생으로 등록함.
- ③ 한국학교에서 받은 전학서류(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재학증명서 등)를 참고하여 이전학년도 학생 자료를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자료입력]에서 입력함.
  - ※ 한국학교에서는 전학서류 발급 시 한국학교장의 직인을 반드시 날인하고, 학부모는 귀국 후 한국학교 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국내학교에 제출함.
  - ※ 교육부 인가 한국학교([참고자료1] 참조)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할 경우 국내학교에서의 전학 처리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외국 소재 타 학교에서의 편입학 처리와 구별해야 함.
  - ※ 국내학교(A) 전출 → 한국학교(B) 전입·전출 → 국내학교(C) 전입 시 국내학교(A) 또는 한국학교(B)로 부터 이전학년도 자료를 받아 입력함.
- 3)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국내 해당 학년의 동일(유사)교과 학업성적으로 반영하여 처리한다. 다만, 동일(유사)교과 인정 등의 사항은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4)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한국학교는 [참고자료 1] '재외한국학교 현황'을 참조한다.
  - ※ 한국학교에 따라 추가로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한국학교인 경우라도 학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해당 한국학교 확인 필수).
- 5) 한국학교와 국내학교 간의 전출·입은 정당한 해외 출국에 한하여 인정한다.
- 6) 한국학교와의 전출·입인 경우 출입국과 전출·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3일 이내)을 수업일수에서 제외한다.

## 아. 북한이탈주민 학생 학적 처리 방법

1)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및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에 따라 교육감소속의 학력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의 장(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 심의한학력인정 및 학년 결정에 따라 전학처리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학적처리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에게 사용하는 학적 용어- 초등학교에 중도 입급하는 경우에는 '취학'으로 처리함.
- ※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의 학력인정과 학적관리는 '탈북학생 지도교사용 매뉴얼(한국교육개발원, 2022.12.)'을 참조함(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www.hub4u.or.kr 자료실 센터발간자료).

## 자. 제주국제학교 학적 처리 방법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1. 전입을 통해 일반학교와 제주국제학교를 거친 경우 6년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 학기를 높인 경우도 인정 가능)
- 2. 제주국제학교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단. '5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초등 6학년으로의 전학이 가능함.
- 2) 국내학교에서 제주국제학교로 전출하거나 제주국제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사'항의 '한국학교 전출·입 처리 방법'에 준하여 처리하며, 제주국제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학년배정은 '바'항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 ※ 제주국제학교: KIS-Jeju(한국국제학교), NLCS Jeju, BHA(Branksome Hall Asia), SJA Jeju(Saint Johnsbury Academy Jeju)
  - ※ 제주국제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이동하는 전입생의 국제학교 재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 및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은 공란으로 둠.
  - ※ 기타 세부적인 학적 처리에 대한 지침은 해당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처리함.

#### 차.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학적 처리 방법

- 1) 국내학교에서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로 전출하거나 학력인정 초·중 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한국학교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며,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시 학년배정은 '바'항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처리 방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 ※ 초·중등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이동하는 전입생의 해당 재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 및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은 공란으로 둠.
  - ※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는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가 있으며, 학력인정 외국인학교에는 청라달튼외국인학교가 있음.

# 카. 소년원학교 등 학적처리 방법

- 1) 재학생의 소년원학교 입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 ※ 교육정보시스템에서는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며, '교육구분' 설정에 '기타'로 등록함.

법적근거

기재요령 안내

목적 등

인적·학적 사항

출결상황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6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사항 등

- 2) 소년원학교 등의 학적처리는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5의 다]를 참조한다.
- 3) 소년원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희망할 경우 학력인정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호~제3호).

제69조(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력인정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 2.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 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 4) 재학생이 소년보호기관(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입교한 경우, 재적교에서는 [참고자료 5]를 참조하여 처리한다.
- 5) 소년원 교육의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영역별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 가) 교과교육: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소년 처우지침」, 「보호소년 교육지침」(법무부) 등
  -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 계획」(고용노동부)
  - 다) 기타: 의료·재활교육, 인성교육

## 타. 아동학대·가정폭력 관련 법에 따른 피해학생의 취학지원 및 비밀처리 방법

- 1) 피해학생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취학, 전입학 및 편입학 포함) 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가해자(친권자 포함)에게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 전입 처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비밀전입여부에 체크처리를 하여 전송되는 학생자료 중 학부모 서비스 신청정보를 제외함.
- 2) 피해학생이 전학을 신청했을 시,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동일 지역 내 포함) 아동학대· 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고 전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한다.
  - ※ 객관적인 자료의 예시: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지방자치단체의 취학지원 요청 공문과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 학대 피해아동 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실 확인서 등
  - ※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학생 관련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 파. 학생미혼모의 위탁교육에 대한 학적 처리 방법

- 1) 학생미혼모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등록 시 위탁교육 기관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교육구분 설정을 '기타'로 하여 등록한다.
  - ※ 2024학년도 이전의 내용은 '교육복지정책과-6434(2023.10.10.)' 공문을 근거로 정정할 수 있음.
  - ※ 위탁교육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학생미혼모의 위탁교육 기관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위탁교육 기관명을 재적교로 입력함.

## 하. 기타 학적처리 방법

- 1) 전입학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석일수 합이 전입교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 학년을 수료할 수 있다.
- 2) '2023학년도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도움 자료(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중앙다문화교육센터, edu4mc.or.kr)'와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중앙다문화교육센터, edu4mc.or.kr)'을 참고한다.
- 3) 재학 중 학력인정 대안학교 간 이동하는 경우는 전출·입으로 처리한다.
  - ※ 학력인정 대안학교에서 전입해 오는 경우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관련 내용을 입력할 수 있음.
  - ※ 학력인정 대안학교 현황은 [참고자료 3]을 참조함.
- 4) 영재학교 재학 중 영재학교가 아닌 학교로 이동하는 경우는 전출·입으로 처리하되, 학업 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 ··〈기재 경로〉······

▶ '전입교'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전입관리-전입관리-전편입/재취학생등록]에서 전입생으로 등록 및 자료 요청하며, 영재학교는 [학적-전출관리-전출관리-전출자료요청접수]에서 전출생 자료 요청사항을 확인한 후 인적·학적사항을 전송함.

법적근거

기재요령 아내

목적 등

인적·학적 사항

출결상황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6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사항 등